

《 보건 세특 자료 》

하이에듀

주제	보건 세특 자료
요약	아래와 같이 주제(보건의료제도)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의 의의

보건의료정책의 의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정의)

※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A%B1%B4%EC%9D%98%EB%A3%8C%EA%B8%B0%EB%B3%B8%EB%B2%95>

따라서 **보건의료 정책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보건의료정책의 의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보건의료체계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저렴한 가격에 전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비용관련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전국민 건강보험
- 저비용 구조
- 의료공급자 선택의 자율성
- 유기적인 공공 일차 보건의료망(보건소 등)

<단점>

- 효과성 측면에서 상한이 없는 본인부담률은 소득계층간 보험재정 및 접근성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
-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인 급여나 증가하는 의료이용을 조달할 만큼 충분히 인상되지 않음
- 지속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의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음
- 보험수가 통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의료의 질 규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

※ 출처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9>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 & 한계점

보건의료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 현황은 너무 폭넓은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보건의료정책 중 특정 사례를 뽑아서 그 현황과 한계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심도있게 다루고 싶은 보건의료정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호법>

■ 간호법이란?

-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
- 쟁점이 되는 내용은 **의료행위와는 구분되는 간호행위가 있다는 것**
- 현재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1)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의 간호행위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여기서 2번은 진료 보조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1번의 내용, 즉 간호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1번의 내용, 즉 간호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굉장히 애매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은 상황.**
- **간호법의 주된 취지는 “간호 행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 간호 행위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할 수 있고 어떤 규율을 받아야 되는 지에 대해서 법으로 따로 정하자”라는 것.**

■ 현행 간호법의 한계

- 실제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많이 하고 있음.
- 특히 의료인력부족으로 인해 **수술을 담당하거나, 집도하거나, 채혈, 대리기록 심전도 검사 등을 진행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음.**
- 약 1만명 정도이고, PA가 없으면 병원이 유지가 안되는 상황 (특히 정형외과, 외과, 흉부외과 등)
- 하지만 **현행 간호법으로는 이들을 규정할 방법이 없음**
- 현행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료행위 '보조'만 가능하기에, PA는 위법인 상황이지만 관행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간호법을 명확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오늘날의 간호 현장은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간호사의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의 문제를 갖고 있음
- 간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임.

■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

- 간호법의 1장 1조 '목적'부분을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라는 부분이 있음
- 여기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이 논쟁이 되고 있음
- **의료기관 밖에서, 즉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한 우려**
- 의료보험 공단에서 보험수가를 받아가는 주체는 현재 의사나 의료기관 뿐
-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도 보험수가를 받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 우려로 인해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

※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02930?sid=102>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278>

→ 두 가지 기사를 보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보험 적자>

■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고갈

- 장기요양보험은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2030년 3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

- 적자의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
-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지난 6월 97만명으로 증가

※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048306?sid=101>

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의료보험 적용 대상 확대

- 1) MRI, 초음파를 급여화
 -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 뇌질환 MIR, 복부, 흉부 질환 MIR, 척추/근골격계 MIR 순서대로 급여화

※ 출처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47481&REFERER=NP>

- 2) 첩약(한약) 급여화

- 월경통(생리통),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환자를 위한 첩약 급여화
-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를 위한 첩약까지 급여화 예정

※ 출처

<http://www.food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655>

- 3) 희귀 질환 치료제 급여화

- 척수성근위축증이라는 질환의 치료제인 ‘졸겐스마’를 급여화 하여, 치료제를 투약받은 아이 6명중에 5명이 생존

※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322044681881>

- 4) 의료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출처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202142432629a1f309431_1/article.html?md=20230202152943_U

■ 의료보험 적용 불가 대상

1) 중증 희귀환자, 고가의 항암제

- '타그리소'라는 항암제는 다른 치료 시도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쓰일 때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 약을 첫 치료제로 쓰면 연간 7천만원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함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103851518?input=1195m>

관련 도서자료

국민건강보험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장기려"박사에 대해 소개하는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 참고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78484&code=61221411&cp=nv>

→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장기려 평전

※ 출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2933769>

저자: 지강유철

출판사: 꽃자리

목차

서문/ 장기려를 다시 쓰며 묻고 또 물었다

프롤로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

1부 어린 시절

선친과 가족

고향 평북 용천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에 저항한 개신교 사립학교

유년 시절

장기려를 있게 한 사람, 이경심

1920년대 개성과 기독교

송도고보 시절

2부 의사 수련기

의사 되기를 결심할 당시의 의료계

진료 과목 선택 과정

“내 눈동자요 내 손과 발이었던 여자”

전문의 수련과정

이광수 소설 주인공 해프닝

스승 백인제

장기려와 노래

장기려와 스포츠

3부 평양 기흥병원 시대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대전’을 등지다

무의촌 진료와 이용설 박사

평양 기흥병원

의사들의 텃세

‘성서조선 사건’에 연루되다

더럽혀진 교회를 등지고

사면초가가 준 값진 선물

삶과 신앙의 스승들 1 -야나이하라 다다오, 함석헌, 후지이 다케시

4부 공산 치하의 평양생활

해방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

충돌하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건국하다 죽어야지

보이지 않는 북한 땅의 최고 통치자

평양 산정현교회

5부 한국전쟁과 장기려

아직도 계속되는 한국전쟁

전운 (戰雲)

돌아오지 못한 개: 장기려가 겪은 평양 폭격 피난

삶과 신앙의 스승들 2-오정모, 주기철, 손양원

6부 복음병원 시대

장기려의 사랑

제3육군병원

용공혐의로 체포되다

의사로서 행복했던 복음의원 시절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복음의원의 정체성 진통
누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말하나
누가 설립자 전영창을 부정하나
복음병원 설립일은 언제이며 초대 원장은 누구인가
의학도로 알았던 부산의대 시절
행려병자 곁으로
첫 세계 일주
장기려의 교회 실험: 성서 연구를 위한 부산모임
장기려의 글쓰기

7부 청십자 의료보험 시대

의료보험의 유래
박정희는 의료보험의 아버지인가
성경 공부도 좋지만 사회에 유익한 일을
청십자의료보험의 창립
전국청십자연합회 결성
자력으로 세운 청십자병원
법정의료보험 시대의 개막
막사이사이 사회봉사상과 청십자
기나긴 의료보험 전쟁
청십자의 발전적 해산
창립의 실무 주역들-김서민, 채규철, 김영환
사랑의 동기가 아니거든 언행을 삼가라
공동체에 대한 꿈
뇌전증(간질) 환자들의 평생 친구
복음간호전문대학의 설립

8부 평화운동 시대

두 번째 소명
복음병원의 '제1차 수난'
장기려의 용기
장기려의 눈에 비친 미국
내면의 위기를 우정으로 극복하다
갑자기 날아든 북한 가족 소식
분단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9부 장기려와 교회 개혁

평생 이어진 교회 개혁 열망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느냐?”
“내가 이제 진리를 찾았습니다”
다시 받은 세례
한국 종들의 모임
‘종들의 모임’의 역사
Two by Two의 비평적 읽기
호주 종들의 모임 아동 성학대 사건
말년의 멘토 어네스트 로빈슨

10부 말년의 나날들

장기려, 그 사람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영원한 안식

에필로그/ 장기려 정신으로 오늘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추천의 글/ 바보처럼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한희철
장기려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2) 장기려

※ 출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0403338>

저자: 정란희

출판사: 씩크하우스

목차

머리말

마음까지 치료한 아름다운 의사

「생각쟁이 열린마당」 장기려기념사업회와 청십자 무료 진료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 것을 맹세합니다

「생각쟁이 열린마당」 일제 강점기의 교육 제도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남으로
「생각쟁이 열린마당」 장기려에게 바보라고 말한 이광수

천막 병원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생각쟁이 열린마당」 년 월 일 휴전 협정을 맺다

의로운 사람들이 만든 기적
「생각쟁이 열린마당」 한국을 빛낸 위대한 과학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
「생각쟁이 열린마당」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한국인들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람들
「생각쟁이 열린마당」 장기려와 마음을 나눈 친구들

백 년의 약속, 천 년의 그리움
「생각쟁이 열린마당」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

장기려의 발자취